

정 평 동 양 학 연 구 회

연구실 운영세칙

홍보연구실

근거 규정 제31조 제1항

본문 7조 ·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정평동양학연구회 규정 제5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연구실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

- ① 연구실의 종류는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 ② 각 연구실의 직무는 별표와 같다.
- ③ 별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3조(공통 직무)

각 연구실은 분야를 달리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공통으로 수행한다.

- 1.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과제의 발굴·수행 및 성과 관리
- 2.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공동연구의 조직
- 3. 춘계·추계 학술대회, 세미나, 콜로키움에서의 연구발표
- 4. 학술총서·연구보고서·연구자료의 집필과 편집 참여
- 5. 해당 분야 고전문헌 및 연구자료의 수집·정리·번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 6. 연구회 교육사업 중 해당 분야 교육과정의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 7. 연구실 간 경계에 걸치는 주제의 공동연구 협의
- 8.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구실적의 보고
- 9.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연구·사업

제2장 설치와 운영

제4조(설치)

- ① 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규정 제21조).

- 1. 연구실의 명칭

2. 설치의 필요성
3. 주요 연구분야
4. 인력구성 — 연구실장 및 연구원
5. 첫 연도 사업계획
6. 소요 예산

② 연구실은 소속 국의 조정을 받으며, 소속 국은 규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과 실적보고)

- ① 연구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업계획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연구실은 매년 연구실적을 회장에게 보고한다(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 ③ 연구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 집행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 ① 연구실에 소속되는 연구원의 위촉은 규정 제8조 제10항에 따른다.
- ② 연구원은 둘 이상의 연구실에 소속될 수 있다.

제7조(연구실 간 협력)

경계에 걸치는 주제는 관련 연구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속 국이 조정하며, 둘 이상의 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회장이 조정한다(규정 제10조 제2항 제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의 순차 설치)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연구실은 계획서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이 세칙의 별표는 설치 가능한 연구실의 직무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연구실별 직무

규정 제23조가 정한 분야를 직무 단위로 풀어 쓴 것이다. 연구실이 신설·통합·폐지되면 이 별표를 개정한다.

11. 홍보연구실

학술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회의 대내외 홍보와 디지털 매체 운영을 수행한다.

1. 연구회의 연간 홍보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연구성과의 대내외 홍보
2. 홈페이지 공지, 뉴스레터, 웹진 등 연구회 공식 매체의 편집과 발행
3.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4. 숏폼 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강의콘텐츠 등 홍보물의 기획·제작과 배포
5. 검색환경에서 연구회 학술·교육 콘텐츠의 노출 개선에 관한 업무
6. 학술대회·세미나·공개강좌·전문교육·강사양성과정·회원모집 등 개별 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과 실행
7. 보도자료의 작성과 언론·미디어 협력에 관한 업무
8. 대학·연구소·학회·공공기관·교육기관 등과의 홍보협력 네트워크 관리
9. 홍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위촉을 요청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 집행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홍보사업 예산은 연구회 전체의 학술적 위상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홍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개인·회원·강사·연구자 또는 개별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홍보가 연구회의 발전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회 전체의 위상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이 세칙은 연구회 규정에 딸린 문서입니다.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합니다. 규정 자체의 제정·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위 문서는 정평동양학연구회 규정입니다.